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 12. 04(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1.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21

라. 상정일자 : 2013. 12. 04(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O 검토보고: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O 질의 및 토론

O 워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인천 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의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

(단위: 주, 천원)

구 분	· 주식명	보유수량	출자금액	예정가격	재산관리관
주 스	한국가스공사	540,000주	2,700,000 (5/주)	31,806,000 (58.9/주)	녹색에너지 정책과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O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은 당초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 도시가 스 보급확대 및 안전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88년부터 '94년 에 걸쳐 출자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관련 주식배당금을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 가스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사업기금¹)」의 재원으 로 활용해 왔으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주식 배당 금 수입'으로 4억 1천만원 편성 요구된 바, 주식을 매각할 경우 배당금 수입이 미실현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인천지역의 한국가스공사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신·증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주식 매각에 따라 지역 입장을 대 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하여는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수입으로 300억원을 편성 요구한 바, 2014년 2월까지 매각하기 위한 방안과 2월까지 매각하지 못 할 경우 결손수입에 대한 대 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¹⁾ 경제수도추진본부(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2년 설치

4. 질의 및 답변요지

<홍성욱 위원>

- 출자시기 및 계기?
- ⇒ '88년부터 총 27억원 출자하여 24만주 주식 보유. 한국가스 공사법에 의무조항으로 명시.
- 보유 사유와 에너지사업기금 배당금 수입 편성 사항은?
 - ⇒ 그동안 배당액 높은 수준 유지, 12월말 보유자에게 배당 지급. 그러므로 올 해 수입에는 이상 없음

<이강호 위원>

- 매각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은?
- ⇒ 재정 악화에 따라 추경에 300억원 편성.
- 외부 시각은 부정적, 타 시·도 보유현황은?
 - ⇒ 전북은 2009년에 매각, 부산도 매각 추진중. 각 지자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매각 추진.

<류수용 위원>

○ 누구나 인정하는 최적의 시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용범,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O 없음

8. 기타 사항

O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1부. 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3
■ 2013년도 재산의 목록(취득 대상)	5
■ 2013년도 재산의 목록(처분 대상)	6
■ 2013년도 재산의 목록(변경 취득)	7
■ 관련 자료	
□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 ···································	8

•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총	계	7	28	104,938.11	155,395,449	
	당 초		28	63,158.2	59,068,277	
토 지	금 회					
	누 계		28	63,158.2	59,068,277	
	당 초	7		41,779.91	96,327,172	
건 물	급 회					
	누 계	7		41,779.91	96,327,172	
	당 초	_		_	_	
기 타	금 회	_	_	_	_	
	누 계	_	_	_	_	

※ 당초: 2013년도 본계획과 변경계획의 누계 숫자임

□ 처 분

(단위: m²,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주식수	기준(예정)가격	비고
총	계		2	56	390,043.73㎡/ 540,000주	649,644,830	
	당	초		56	389,116.1	617,305,105	
토 지	급	회					
	누	계		56	389,116.1	617,305,105	
	당	초	2		927.63	533,725	
건 물	급	회					
	누	계	2		927.63	533,725	
_1 _1	당	초	_				
기 타 (주식)	급	회		58.9/주	540,000주	31,806,000	
	누	계		58.9/주	540,000주	31,806,000	

※ 당초: 2013년도 본계획과 변경계획의 누계 숫자임

□ 변경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총	계	1		6,196.96	19,537,000	
	당 초					
토 지	금 회					
	누 계					
	당 초	1		6,196.96	19,537,000	
건 물	금 회					
	누 계	1		6,196.96	19,537,000	
	당 초					
기 타	금 회	_	_	_	_	
	누 계	_	_	_	_	

■ 2013년도 재산의 목록(취득 대상)

(단위: m², 천원)

관리	재산	,	재 산 의]	취 득	리고리가	ವ೯ <u>೫</u> ೧	(단위: m², 재 산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관리관	비고
계						104,938.11	155,395,449			
2013-1	토지	서구 경서동	939-11	대	1,500	제205회 역 제외(수	임시회에서 ·정가결)	청라119안전 센터(신축)	서 부 소방서장	본계획 12.11.28
"	건물	서구 경서동	"	(1동)	_		"	청라119안전 센터(신축)	서 부 소방서장	"
2013-2	토지	서구 공촌동	305	대	1,358.3	1,358.3	1,003,783	국(경찰청)유· 공유재산 교환	재산관리 과 장	"
"	건물	"	"	(1동)	-	811.92	512,088	"	"	"
"	토지	부평구 산곡동	369- 480	대	876	876	1,165,080	"	"	"
"	건물	"	"	(1동)	-	144	43,200	"	"	"
"	토지	남구 주안동	1530- 18	대	149.8	149.8	135,269	"	"	"
2013-2	건물	"	"	(1동)	_	159.99	44,000	"	"	"
2013-3	토지	남구 도화동	76-1외 12필지	-	76,587.5	5,247	15,214,799	JST 신축	경제수도 정 책 관	IJ
"	건물	남구 도화동	76-1외	(1동)	_	14,465	42,841,654	"	"	ı,
2013-4	토지	남구 도화동	206-2외 9필지		72,214.5	3,753	10,882,627	행정타운 (상수도본부청사) 신축	상수도 사 업 본부장	"
"	건물	"	206-2 외	(1동)	_	10,347			"	"
2013-5	토지	서구 원창동	392-3		46,617.9	46,617.9	19,020,103	제2외곽순환 도로 부지	도시계획 과 장	2차변경 13. 5. 6
2013-6	토지	서구 경서동	939-11	-	1,500	1,500	1,848,000	청라119 안전 센터(신축)	서 부 소방서장	4차변경 13. 7.11
"	건물	"	939-11	(1동)	_	990	2,056,230	"	"	"
2013-7	토지	계양구 용종동	207-1		3,656.2	3,656.2	9,798,616	사유재산 교환	대변인	6차변경 13.10.11
"	건물	"	207-1	(1동)	_	14,862	20,230,000	기부채납	대변인	и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 2013년도 재산의 목록(처분 대상)

(단위 : m², 천원)

관리	재산		재 산 의	田 人]	처 분	1777121	-14 16	재 산	1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기준(예정)가격	처분 사유	관리관	비고
계						390,043.73 540,000주	649,644,830			
2013-1	토지	부평구 청천동	192-5	다	2154.5	2154.5	1,870,106	국(경찰청)유· 공유재산 교환	재산관리 과 장	본계획 12.11.28
"	토지	중 구 북성동2가	13-1	대	199.7	199.7	403,394	"	"	"
"	토지	남 구 용현동	623-10	대	177.2	177.2	228,588	"	"	"
"	토지	남동구 간석동	119-7	대	145.5	145.5	298,275	"	"	"
2013-1	건물	남동구 간석동	353-10	(1동)	_	115.71	21,637	"	"	"
2013-2	토지	연수구 송도동	30-1외 43필지	대		74,073.2	234,133,863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평가조정 담당관	1차변경 13. 3.22
2013-3	토지	서구 원창동	388-4외 8필지	잡	75,952.3	75,952.3	32,788,997	시 건전재정 활성화	도시계획 과 장	2차변경 13. 5. 6
2013-4	토지	서구 원창동	381-7 외 17필지	잡	56,366.6	56,366.6	22,997,736	시 건전재정 활성화	회계과장	3차변경 13. 7.11
2013-5	토지	남동구 논현동	764-4	대	10,776.8	10,776.8	18,105,024	재정 확충	회계과장	5차변경 13. 9.12
2013-6	토지	서구 원창동	395-9	잡	1,917.0	1,971.0	626,778	재정 확충	도 시 계획과장	"
"	토지	서구 원창동	395-10	잡	3,379.2	3,379.2	1,074,585	"	"	"
2013-7	토지	서구 공촌동	305	대	1,358.30	1,358.30	1,003,783	공공용 재산활용계획에 의거 매각	회계과장	6차변경 13.10.11
"	건물	서구 공촌동	305	(1동)		811.92	512,088	"	"	ű
2013-8	토지	계양구 용종동	207-2	대	3,656.2	3,656.2	9,798,616	사유재산 교환	대변인	"
2013-9	토지	연수구 송도동	324	대	158,905.6	158,905.6	293,975,360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평가조정 담당관	7차변경 계획
2013-10	주식	कृन	구가스공시	ŀ		540,000주	31,806,000	재정 확충	녹색에너지 정책과장	8차변경 계획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 2013년도 재산의 목록(변경 취득)

(단위 : m², 천원)

관리	재산		재 산 의	引 丑 /	٩	변경(취득)	키즈카져	기준가격 변경(취득)	재 산	비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적	기단기식	사유	관리관	비포
2013-1	건물	연수구 선학동	217-5 외		-	6,196.96	19,537,000	면적 축소		5차변경 13. 9.12
				<u></u>	하	빈	칸			

□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

- 최근 우리시의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시가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주식의 평가금액 기준 대비 연평균 배당 (1.1%)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3.0%)에 미달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

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제12조

2. 기본현황

□ 기관별 주식보유

(2012년말 기준)

구 분	계	정 부	한 전	지 자 체	기관·일반	비고
주 식 수	77,284,510	20,758,110	18,900,000	7,326,600	30,299,800	
투자금액 (백만원)	386,423	103,791	94,500	36,633	151,049	발행가격 5,000원/주
구성비 (%)	100	26.9	24.5	9.5	39.1	

※ 인천 0.7%, 서울 4%, 경기 1.2%, 부산 0.66%, 대구 0.42%

□ 우리시 출자 및 배당실적

○ 출자목적

-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안전공급 기반 구축
- 수익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

○ 출자경위

- 1단계 LNG 수도권 공급사업 관련 경제장관 회의('84.8.24)
- ⇒ 출자지분율 : 정부51%, 한전28%, 서울시15%, 인천시4%, 경기도 2%
- 2단계 LNG 전국 공급사업 관련 경제장관회의 ('90.4.13)
 - ⇒ 출자지분율 : 정부 51%, 한전 39%, 지방자치단체 10%

○ 주식출자

- 출자금액 : 2,700백만원 [88년: 2억원, 90년~94년: 25억원 (5억/년)]

- 보유주식 : 540,000주 (배당가격 : 5천원/주)

- 지 분 율 : 0.7% (발행주식 : 77,284,510주)

○ 주식평가

- 기 준 일 : 2013.10.30.

- 주식종가 : 64,200원

- 평 가 액 : 34,668백만원(투자 수익율 : 1,284%)

○ 주식배당금

- 배당기간 : 1988년~2013년 (26년간)

- 배당금액 : 10,259백만원 (연평균:394.6백만원)

- 수익률(%): 380% (배당금액 / 투자금액)

- 연도별 배당실적

구 분	계	88~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0
배 당 률(%)	_	-	15.4	12.4	15.2	32.8	유상증자
배당금액 (백만원)	10,259	7,627	416	335	410	886	585

3. 주식시장 동향

□ 코스피 시장 전망

-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가 35일간 이어지면서 약 12조원의 한 국 주식매수로 연말 코스피 2,200 돌파예상
- 2년간 박스권에 머무르던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물이 집중되어 대형주들이 주도 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맞물려 한국의 투자매력이 상승

□ 한국가스공사 주가

- 미수금 유동화 및 유상증자 등의 불확실성 해소
- 셰일가스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 전망
- 원전비중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스의 수요증대 전망

□ 한국가스공사 거래 실태

- 거 래 량 : 20만주 ~ 30만주 (일일 평균)
- 주식가격 : 64,200원 (2013.10.30일 기준)
- 주가변동 추이



※ 보편적으로 매년 동절기 (4분기~1분기)때 주가 강세 보임

4. 증권사 매각 제안

□ 종합주가 지수분석

구 분	우리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현대증권(주)
코스피 지 수	1,850p~2,300p	2,000p~2,200p	1,950p~2,400p
공 토 의 견	□ 2013년 4분기 강세장으로 전환하여 2014년에는 과거 2년간의 박스권을 탈피하여 2015년 또는 2016년까지 우상향 추세 전망	□ 미국과 유렵의 동반 회복 세와 중국 경기 반등으로 아시아 경제 안정화 □ 2013년7월 이후 외국인의 KOSPI 시장 매입지속으로 우상향의 주가흐름 예측이 우세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제조업 경기회복 국면 지속 전망 □ 한국은 정부의 부동산 등 내수경기 부양정책과 더불어 대외수요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상승으로 이어짐
특 이 사 항	□ 경기회복심리와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추세를 형성 하나, 실적 부진우려로 인한 조정요인이 있을 전망	다른 국가와 차별화 되는한국의 양호한 펀더멘탈부각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선진국 경기회복과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맞물 리며 한국의 투자매력도 상승

□ 한국가스공사 주식동향 분석

구분	우리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현대증권(주)
예상 가격	62,300원~81,786원	58,000원~79,300원	67,000원~80,000원
매각 시기	□ 1차 : 2014년 1분기 □ 2차 : 2013년 12월	□ 1차 : 2014년 1분기 □ 2차 : 2013년 12월	□ 1차 : 2013년 12월 □ 2차 : 2014년 1분기 □ 3차 : 2014년 4분기
판단 이유	2014년 중 당기순이익 규모는 해외시장에서 호실적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동절기에 형성될 높은수준의 주가는 2013.11월부터 2014.2월까지 유지 될 가능성이 큼	- 동절기에 영업비중이 높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11월부터 12월에 정점 예상

구분	우리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현대증권(주)
판단 이유	모잠비크 가스전 가치등이 재조명 받을 경우증자 이슈로 저평가되었 던 주가가 한단계 레벨 업할 가능성 있음	□ 2013년도의 배당수익은 약 5억원~10억원 사이로 전망	□ 현금배당률은 유상증자 효과로 인해 14~18% (전년 32%)수준으로 허락 예상
	□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원전 비중축소 방침 발표, 유상 증자 성공 등 잇따른 호재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상태	□ 배당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인 2013.12.27. 이후 매각이 효과적	 2014.1월까지 주가상승 흐름을 고려시 외부여건 등으로 2013년 매각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2014년 1월중 매각제안
	 한국가스공사의 배당기 산일은 정관상 매년 1월 1일로 연도를 넘긴 후 매각할 경우 배당금수령과 매각대금 수취가 모두 가능함 	마다서 14년 1월~2월이 최적의 매각 시점임	□ 2014.1월중 매각이 불가 할 경우 2014.10월경 매각 고려
시장	2014년 중 실적 개선과함께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년초 주가 상승 가능성 있음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해소되어	□ 2013년 미수금 유동화 및 유상증자 등의 불확실성 해소로 공사 주식가치 회복 예상
전망	부진했던 2013년 실적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실적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가능성 존재	고 공사의 Fundamental에 대한 재조명으로 주가 회복 지속예정	□ 원전비중축소로 가스의 수요증대 전망에 따른 주가 상승예상
매 각 수수료	0.04%	0.05%	0.05%

○ 한국가스공사 주가 전망 흐름도



○ 주식거래 방식 검토 및 추천

구분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	장중 분할 매매
	□ 개장 전·후 시간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 주식거래 정규시간에 종목, 수량, 가격이
특징	대량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매각하는 방식
	- 매각 시간과 규모의 통제가능	□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 시간적 분할매각 으로 수익창술 가능
장점	□ 목표주가를 토대로 단기간 신속하게 매각 가능	□ 장중 시황변화에 따른 대응에 유연한 대처가능
	·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대금 극대화 도모 가능	
	현실적으로 장기 우량투자자 대상 물색에 어려움이 있음	□ 충분한 장내 매수주문이 없을 경우 큰 폭의 매각가격 하락
단점	고정된 할인율	 반복된 대규모 매도 주문으로 인한 매각 정보의 유출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상 매각대금을 하회할 수 있음 (할인률 발생)
추천 및 제안	□ 우리투자증권(주) : 할인율 4~5% □ 신한금융투자(주) : 할인율 3% □ 현대증권(주) : 할인율 4%	

□ 실질주주로 전환

○ 인천광역시는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명부주주로서 장외 거래 가능하고, Block Deal 거래는 불가하여 실질주주로 전환필요

구 분	명부주주	실질주주	
특 징	□ 주주 혹은 국민은행이 주식 실물보유 □ 실물 양도를 통한 장외거래 □ 명의개서(名義改書)가 안 된 주식 □ 증권사 계좌 불필요	□ 실물 보유 없이 전산 거래 □ 주식시장에서 장내거래 □ 명의개서된 주식 □ 증권사 계좌 필요	
필 요 성	필 요 성 Block Deal은 장내거래로서 실질주주만 활용이 가능 매각 타이밍 도래시 명부주주의 매각은 장기간 소요		
제 안	제 안 "매각일정과 관계없이 조속한 실질주주 전환을 통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		

5. 우리시 검토 의건

□ 매각검토 배경

- 최근 우리시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확보의 필요성 대두
- 한국가스공사 주식 평가금액 기준 수익률 저조
 - 주식 평가금액 346.7억원 기준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1.1%로 정기예금 금리 3%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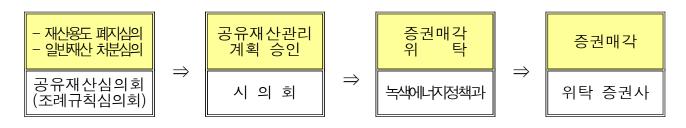
□ 매각근거

- 한국가스공사법 및 시행령의 출자근거 규정삭제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 출자제한

□ 주식매각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 58.900원/주 (예상수익 318억원)
- 기 준 일 : 2013.10.15.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 산출방식
 -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 산출하여 산출한 가액 이상 (붙임#- 2)

□ 주식매각 흐름도



□ 매각시기 : 2014년 1/4분기

- 한국가스공사 실적은 계절성이 뚜렷하여 1/4분기, 4/4분기 영업 실적이 우수하며. 2/4분기와 3/4분기 영업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4년 1분기(1월~2월)를 최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2014. 1분기 중 매각이 불가할 경우, 2014. 4분기(10월경) 매각 고려

□ 매각방식: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

- 주식시장 흐름과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량매매에 따른 목표주가를 토대로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대금 극대화하는 시간외 대량매매 (Block Deal)로 거래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시간외 대량매매시 발생될 수 있는 할인율은 유효 경쟁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최소 할인율로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극복 가능한 데 반해
- 장중분할매매시는 장시간 반복되는 대규모 매도주문으로 인한 매각 정보의 유출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상 매각대금을 하회시 극복 불가능

6. 향후계획

- 2013.11월~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의회 의결)
- 2013.12월 : 실질주주 전환 (국민은행 예치⇒증권사 예탁)
- 2014.1분기: 주식매각 추진

붙임: 1. 처분대상 재산 목록

- 2.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예정가격 산출
- 3. 한국가스공사 주식보유 현황. 1부.
- 4. 한국가스공사 연도별 출자 및 배당. 1부.
- 5.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주, 천원)

	재산	재 산 의 표 시		처 분	-) 7 -) 1]	-1 H J A	재 산	n)	
	구분	주 식 명	한주당 액면가	증 권 보관기관	처 분 주식수	기준가격	서군사市	재 산 관리관	비고
1	주식	한국가스공사	5	국민은행	540,000	31,806,000	재정 확충	녹색에너지 정책과장	
			0]	하	빈	칸			

【붙임 2】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예정가격 산출

(단위 : 원, 주)

번호	일 자	① 종가	② 거래량	3 = 1 x 2
1	2013-08-30	55,500	212,212	11,777,766,000
2	2013-09-02	58,100	464,853	27,007,959,300
3	2013-09-03	60,300	805,106	48,547,891,800
4	2013-09-04	60,000	691,826	41,509,560,000
5	2013-09-05	58,100	306,088	17,783,712,800
6	2013-09-06	59,200	324,361	19,202,171,200
7	2013-09-09	57,600	347,035	19,989,216,000
8	2013-09-10	58,300	233,697	13,624,535,100
9	2013-09-11	57,800	263,905	15,253,709,000
10	2013-09-12	58,100	200,853	11,669,559,300
11	2013-09-13	58,200	230,063	13,389,666,600
12	2013-09-16	56,800	306,469	17,407,439,200
13	2013-09-17	57,500	224,108	12,886,210,000
14	2013-09-23	59,300	340,659	20,201,078,700
15	2013-09-24	59,500	301,057	17,912,891,500
16	2013-09-25	59,200	290,847	17,218,142,400
17	2013-09-26	58,200	378,071	22,003,732,200
18	2013-09-27	57,800	273,880	15,830,264,000
19	2013-09-30	57,000	259,752	14,805,864,000
20	2013-10-01	56,200	339,845	19,099,289,000
21	2013-10-02	55,400	292,733	16,217,408,200
22	2013-10-04	56,200	477,701	26,846,796,200
23	2013-10-07	54,200	616,403	33,409,042,600
24	2013-10-08	54,900	802,179	44,039,627,100
25	2013-10-10	55,200	548,279	30,265,000,800
26	2013-10-11	58,100	910,579	52,904,639,900
27	2013-10-14	61,900	1,551,909	96,063,167,100
28	2013-10-15	62,300	657,292	40,949,291,600
29	2013-10-16	64,100	1,038,972	66,598,105,200
30	2013-10-17	63,000	602,785	37,975,455,000
합계			14,293,519	842,389,191,800
상장증권 예정가격				58,935

【붙임 3】

한국가스공사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원)

주주명	소유주식수	납입자본금	소유비율(%)
정 부	20,758,110	103,790,550,000	26.86
한 전	18,900,000	94,500,000,000	24.46
지자체계	7,326,600	36,633,000,000	9.47
서 울	3,080,000	15,400,000,000	3.99
경 기	942,000	4,710,000,000	1.22
인 천	540,000	2,700,000,000	0.70
부 산	509,400	2,547,000,000	0.66
경 남	454,600	2,273,000,000	0.59
대 구	327,200	1,636,000,000	0.42
전 남	309,400	1,547,000,000	0.40
대 전	291,000	1,455,000,000	0.38
광 주	254,600	1,273,000,000	0.33
경 북	236,400	1,182,000,000	0.31
충 북	200,000	1,000,000,000	0.26
충 남	145,600	728,000,000	0.19
강 원	36,400	182,000,000	0.05
일반소계	30,209,800	151,049,000,000	39.21
우리사주	2,018,807	10,094,035	2.61
자 사 주	4,675,760	23,378,800,000	6.05
외 국 인	6,683,385	33,416,925	8.65
기타일반	16,921,848	84,609,240,000	21.90
합계	77,284,510	386,422,550,000	100.00

【붙임 4】

한국가스공사 연도별 출자 및 배당

연 도 별	출자금(억원)	연도별 배당금(원)	비고
계	27	10,259,091,760	
1988(67])	2	591,780	
1989(77])	-	3,000,000	
1990(87])	5	1,109,580	
1991(97])	5	6,027,390	
1992(107])	5	60,478,140	
1993(117])	5	86,506,840	
1994(127])	5	112,191,780	
1995(137])	-	162,000,000	
1996(147])	-	108,000,000	
1997(157])	-	-	무배당(IMF)
1998(167])	-	162,000,000	
1999(177])	-	270,000,000	
2000(187])	-	364,500,000	
2001(197])	-	594,000,000	
2002(207])	-	810,000,000	
2003(217])	-	891,000,000	배당율(33%)
2004(227])	-	1,080,000,000	배당율(40%)
2005(237])	-	934,200,000	배당률(35%)
2006(247])	-	594,000,000	배당률(22%)
2007(257])	-	756,000,000	배당률(28%)
2008(267])	-	631,800,000	배당률(23.4%)
2009(277])		415,800,000	배당률(15%)
2010(287])	-	334,800,000	배당률(12.4%)
2011(297])	-	410,400,000	배당률(15.2%)
2012(307])	-	885,600,000	배당률(32.8%)
2013. 9월	-	585,086,250	신주인수권 권리매각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매각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국가재산법 시행령

-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2. 제41조제3호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 3. 제41조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격
- 4. 제41조제5호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9.2.3>
-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u>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 2. 한국은행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 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경우에 한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모집"이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 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u>법 제9조제7항</u>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 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 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